



월간 건설법제동향

2026년 1월호

2026. 1. 3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동안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제공해 온 '건설산업 주요 법률 동향'의 범위와 깊이를 한층 강화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법률 동향에서 나아가, 하위법령(시행령·규칙)까지 분석 범위를 대폭 확대한 「월간 건설법제동향」을 매달 마지막 주 발간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가 단순한 입법 흐름 파악을 넘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률

- 건설 도급 부당특약 무효 규정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개 의무 강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12.29~'26.1.27)

법령

-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관련 법령 입법 정비
-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 전용 차단을 위한 입법불비 해소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 민간공사 적정 공기 확보 기반 마련
- 조달청 기준 정비 : 공공공사 발주자 우월적 지위 남용 해소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 최근 1달간(‘25.12.29.~’26.1.27.) 국회에서는 총 710건의 법률이 발의되었으며, 건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78건이 발의되어 10%를 상회하는 내용이 건설산업을 관광하는 입법으로 타 산업 대비 법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큼.
- 다만, 그간 건설산업 관련 입법 내용 대부분이 규제·처벌의 신설·강화를 통한 산업 규율적 측면이 강하였다면, 이달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침체된 산업 활력 제고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임.
- 하지만, 건설 산재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에도 여러 내용이 계속적으로 발의된 점 또한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이슈 1 건설 도급계약 공정성 확보의 첫걸음…甲乙관계 부당특약 개선되나?

- 우리 「헌법」과 「민법」 및 개별 법률에서는 각 계약주체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심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이 가능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 체결·이행에서 계약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계약공정의 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를 이행토록 하는 계약의 기본 원칙은 우리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에서도 이를 도급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 중임.
 - 또한,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대부분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에 대해 그 부분에 한정한 무효(부당특약 무효)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계약공정의 원칙’의 충실향을 규율하고 있음.

〈표 1〉 건설 분야 도급계약의 원칙 규정 현황(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 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
지방계약법 제6조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하도급법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허나, 건설산업의 기본법률에서 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당특약 무효에 대해 ‘현저한’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간 법원에서는 개별 사안별 부당 특약 해당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¹⁾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급등 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도급계약금액 조정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간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별 계약에서 이를 특약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불가피하였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당특약 무효 관련 ‘현저한’에 대한 명확화로 도급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발의됨.
 -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0호)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기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에서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함.

1)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 221958 판결 등.

- 해당 법률안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의 빈번한 발주자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시급한 입법임.
 - 다만, 정부가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계약법 전면 개정을 추진(국무회의 통과 '25.12.16)하여 현재 입법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5371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신설하면서 '현저한'의 내용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필요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허나, 산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과 같은 산업을 규율하는 타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조속 입법되기를 희망함.

현행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5371호)
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신설〉	제538조의2(사정 변경)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u>현저히</u>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슈 2 |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입법의 합리화

-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허나,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정공기 산정에 대한 발주자의 책무(제45조의2)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 의무 규정을 부여치 않은 선언적 사항에 국한한 실정이며, 공공공사 발주청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경우 이의 준수 의무가 명확히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실제 최근 3년간 법적 공개 의무 대상 공공공사 중 10,046건을 임의 발췌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92.5% 사업에서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개 의무를 미준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세 기준 모두를 공개한 사업은 0.3%에 불과한 상황임.

- 이런 현실 속 최근 국회는 현행법령에서 명확히 발주청의 책무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고시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적합지 않기에 해당 절차상 불가한 사업 유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을 발의함.
 -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16호)은 현행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에서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거나 위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통해 이를 규율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지 않다는 지적임.
 - 이에 공공공사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제시함.
- 하지만 상술하였듯이 대다수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번 입법안과 함께 발주청의 책무를 지킬 수 있는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함.
 -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법률안에서는 공공·민간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에 대해 발주자에게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을 통한 발주자의 책무 규정 또는 현행법(「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한 정비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다만, 이미 관련 고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외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예를 들어 의무 미준수 발주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 정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함.
- 또한, 이와 별도의 사항이기는 하나 현재 국가계약의 경우 발주청의 예정가격 결정 투명성 담보를 위해 공사기간과 같이 입찰공고 시 공사비 산정근거 공개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의 경우 해당 규정이 부재하기에 이를 의무 규율하도록 개정 또한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함.

현 행	개 정 안(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신 설〉	<p>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p> <p>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의 공고</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건설산업 관련 직·간접적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12.29~'26.1.27)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신설·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53호(윤준병 의원 등 14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하도록 규정 중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제안방향)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안 제105조제1호 등)
「건설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54호(윤준병 의원 등 14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擬制)규정을 두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해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 (제안방향)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55호(윤준병 의원 등 14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의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쟁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 (제안방향)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 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에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안 제21조의2)
「소형모듈 원자로 및 초소형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64호(김장겸 의원 등 11인)] ('25.12.29.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법률명	주요 내용
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p>수립·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가 새로운 전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한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설기간이 단축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형모듈원자로에 특화하여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사업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등 소형모듈원자로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의무 부여(안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소형모듈원자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비용은 정부 출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안 제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형모듈원자로 등의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사업 부지의 확보 및 제공, 기반시설 구축, 건설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형모듈원자로 등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성 향상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정부에게 소형모듈원자로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개발 지원, 기업과의 채용 연계 훈련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 정부에게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분야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 정부에게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연구 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정부에게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분야 기술의 국제공동연구, 국제표준화,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정부에게 소형모듈원자로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홍보·교육,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및 제20조)

법률명	주요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67호(채현일 의원 등 14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방용품 기술 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부여 중이기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6조) (제안이유·방향②)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 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인증 수요에 대한 자연 처리, 품질 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50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78호(이개호 의원 등 14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4년 시작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2024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 (제안방향)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82호(아연희 의원 등 18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 개정 ※ 본 법률안은 권영진·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15213호)의 의결을 전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685호(이연희 의원 등 19인)] ('25.12.2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 구조 마련이 필요하나,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 (제안방향) 산업단지를 기업 및 출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경쟁력 극대화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

법률명	주요 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03호(전용기 의원 등 13인)] ('25.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 현행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 부재 - (제안방향)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해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신항만 건설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12호(문금주 의원 등 11인)] ('25.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제안방향) 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 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개정(안 제18조제1항 등)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34호(이학영 의원 등 13인)] ('25.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 그러나,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에 확대 필요 - (제안방향)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도급인(원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 수급인(하도급자 등)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하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37호(박수영 의원 등 11인)] ('25.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 -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 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노후하수도의 원활한 개·보수를 위해 하수도 폐지, 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제32조제1항 및 제3항)

법률명	주요 내용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48호(이상식 의원 등 14인)] ('25.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제기 (제안방향)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63호(맹성규 의원 등 10인)] ('25.12.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기에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의 일반적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필요 (제안이유①)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현실화 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제안이유②)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민이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시·도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제안이유③) 공적 기준가격으로서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도 보강 필요 (제안방향)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정의인 적정가격의 개념을 현행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하고,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5년)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 전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 목적으로 작성하는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8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777호(민병덕 의원 등 13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제안방향)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안 제49조제4항제1호)

법률명	주요 내용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802호(윤재옥 의원 등 10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 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되며, -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42조제2항)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805호(박대출 의원 등 11인)] ('25.12.31.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필두로 동 분야의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 이러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을 구축하여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제안방향) 우주항공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 ▪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자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26조·제27조)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29조)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안 제30조) ▪ 기획예선처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39조) ▪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 본 법률안은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1호), 「조세특례제한

법률명	주요 내용
	<p>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2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호)의 의결을 전제</p>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08호(한정애 의원 등 17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①)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통해 영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별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부재한 실정 (제안이유②) 최근 일부 기업형 임차인 및 외국법인 등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저해하고 선의의 임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세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제안이유③) 10년 이상 장기간 성실하게 영업을 해온 소상공인이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생계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생계형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서의 영업이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아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시 심각한 생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행 기준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실제로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상황
「공공주택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14호(조정식 의원 등 13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해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

법률명	주요 내용
	<p>원칙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골재 채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15호(조정식 의원 등 13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방향)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16호(조정식 의원 등 13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 중 그런데 현행법령에 공사기간 산정의 주체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미부합 (제안방향)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17호(조정식 의원 등 13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중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방향)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 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18호(한준호·윤재옥 의원 등 11인)] ('25.12.31.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Site Construction)하는 것이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법률명	주요 내용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며, 매 공사마다 건설 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이며, 현장 고소 작업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 그러나 현재는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상충되는 현장 중심의 각종 건설 규제 및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 물량이 부족하여 높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술 투자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 - (제안방향)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 체계 및 규제 완화 등 지원 특례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7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품질관리에 유리한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 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조 및 제2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39조 및 제41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827호(김용태 의원 등 10인)] ('25.12.3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규정 중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제20조 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4항, 제32조제1항)

법률명	주요 내용
「지방세 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39호(김미애 의원 등 10인)] ('26.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치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방향)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안 제75조의5 등)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60호(염태영 의원 등 12인)] ('26.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협정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협정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안방향)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안 제22조제5항)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79호(복기왕 의원 등 14인)] ('26.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 중이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 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제안방향)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5호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7조의3 신설)
「주거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5893호(김재섭 의원 등 12인)] ('2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법률명	주요 내용
「 하도급법 」 규제 강화	<p>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기상한지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중 - (제안방향)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등)
「 전시산업발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894호(강준현 의원 등 12인)] ('26.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에는 원도급자의 지급정차·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자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①) 하도급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도급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 부여(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도급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 - (제안방향②)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 (제안이유③)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 시 원도급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 (제안방향③) 원도급자의 규제부담 합리화를 위해 원도급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 설정(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01호(김종민 의원 등 10인)] ('26.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이기에 전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제안방향)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08호(진선미 의원 등 13인)] ('26.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 발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 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시설 등)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19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6.1.8.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 - 이에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산업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하기에 보완 필요 - (제안방향)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뚫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지역별 기능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전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권역을 "광역권"으로, 광역권 내에서 산업·교통 등의 기능 수행이 활발하여 법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지구를 "거점지구"로 정의(안 제2조) ▪ 광역권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과 부합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규정(안 제4조) ▪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권을 대상으로 혁신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등 사업을 뚫어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점지구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자율차·UAM 시범지구, 문화도시 등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학연협력, 창업센터, 도로·철도 등 건설, 공공주택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 광역권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금융, 산업융합, ICT,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특례를 부여

법률명	주요 내용
	<p>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권 내 주택 공급기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부대사업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대상 우선 선정, 신속·일괄 실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23조, 제24조) ▪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및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광역권별 범부처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범부처)·지방(광역권) 간 광역권발전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예산을 우선 지원 하며, 협약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원활한 체결과 이후의 이행관리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광역권발전협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28호(이해민 의원 등 13인)] (26.1.8.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 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 발생 중 - (제안방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 강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안 제2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해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하려는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관련 복합 인·허가 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 임아웃제(인·허가 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10조)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비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및 「건축법」 상 승강기,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 상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적용 예외, 그밖에 입자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신청 등에 관해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주거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51호(김도읍 의원 등 10인)] ('26.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방향)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중이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掌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할 필요 -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안 제8조의2 신설 등)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79호(조정식 의원 등 11인)] ('26.1.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이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하는 규정이라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과 지침의 내용 통일성을 도모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的 개념을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85호(조정식 의원 등 10인)] ('26.1.1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중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 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p> <p style="background-color: #a6c9ff; color: white; padding: 2px 10px;">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5999호(김소희 의원 등 10인)] ('26.1.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 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 (제안방향)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를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2호 아목 신설) <p>※ 이 법률안은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p>
<p>「에너지 이용 합리화법」</p> <p style="background-color: #a6c9ff; color: white; padding: 2px 10px;">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00호(김소희 의원 등 10인)] ('26.1.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적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 - (제안방향)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감축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 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 유도(안 제365조의4 신설) <p>※ 이 법률안은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99호)의 의결을 전제</p>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09호(박정 의원 등 10인)] ('26.1.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자산 또는 공유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법률명	주요 내용
	<p>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는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확보 유도(안 제26조제5항) <p>※ 이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p>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010호(박정 의원 등 11인)] ('26.1.1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체계상 같은 법 별표에 근거가 명시되어야만 운용이 가능한데, 현행 별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장기 사용 허가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료 감면의 특례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제안방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안 별표 제112호) <p>※ 이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9호)의 의결을 전제</p>
「지방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020호(김예지 의원 등 11인)] ('26.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 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 필요 (제안방향)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개정(안 제14조의2 신설)
「국가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022호(김예지 의원 등 11인)] ('26.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 필요 (제안방향)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037호(체현일 의원 등 13인)] ('26.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중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 표시를 하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 또한 발생 중 (제안이유②)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상황 (제안방향)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8호 신설) ▪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하여 형식승인 제한에 대한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8호 신설)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안 제39조제1항)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제1항 단서) ▪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 폐지(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044호(복기왕 의원 등 11인)] ('26.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 중 (제안방향)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소음·진동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051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6.1.1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현행법의 소음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

법률명	주요 내용
「국고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도 총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53호(윤준병 의원 등 13인)] ('26.1.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 중 - 그런데 계약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자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유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방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55호(윤준병 의원 등 13인)] ('26.1.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계약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자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 유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가 계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56호(윤준병 의원 등 13인)] ('26.1.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나, 계약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중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자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유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지방 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68호(윤준병 의원 등 13인)] ('26.1.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등에 있어 선금 또는 개괄신청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급금(先給金)이나 개산급(概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서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 중 - 그런데 계약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자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능력, 자금 상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유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69호(김정재 의원 등 11인)] ('26.1.15.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중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종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 - (제안방향) 교통유발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안 제37조제3항 신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086호(이해식 의원 등 13인)] ('26.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

법률명	주요 내용
	<p>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 발생 중 (제안방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 최소화(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제41조의2)
「물환경 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00호(허종식 의원 등 12인)] ('26.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중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난해 (제안방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02호(허종식 의원 등 10인)] ('26.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이하 “점용료 등”)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 중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 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제안방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14호(임호선 의원 등 12인)] ('26.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최근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통근·통학, 산업단지 연계,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광역적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단일 중심 도시가 아닌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광역교통 정책 역시 실제 교통생활권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 증대 그러나,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중심 권역과 그 외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대도시권 중 최근에 추가된 전주권을 제외하고 광역교통망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단일 권역 구조로 인식·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권역 내부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교통축과 다핵화된 광역교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 제기

법률명	주요 내용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 대도시권을 특정 광역시 중심으로 한정하는 법적 구조를 개선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 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권 내부의 디랙트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과 계획에 충실히 반영(안 제2조제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117호(윤종오 의원 등 12인)] ('26.1.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은 실정 - (제안방향)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 명시, 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133호(임종득 의원 등 13인)] ('26.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 중이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 (제안방향)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 제44조) • [의안번호: 제16137호(조경태 의원 등 13인)] ('26.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 중 -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뿐만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 발생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등)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38호(김희정 의원 등 10인)] ('26.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 중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검토 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제기 (제안방향)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안 제63조의2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39호(김희정 의원 등 11인)] ('26.1.19.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중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필요 (제안방향)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63호(조은희 의원 등 10인)] ('26.1.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현행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제안방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164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6.1.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해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운영·관리를 위해서는民間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民間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

법률명	주요 내용
등에 관한 법률」	<p>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현행 지원 규정은 행정적 특례 및 규제 완화에 치중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180호(박찬대 의원 등 11인)] ('26.1.2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 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 -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업무·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사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안 제9조의9 신설)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187호(복기왕·권영진 의원 등 37인)] ('26.1.20.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4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해당 법률만으로는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인 정비의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종동, 산본으로 한정하여 1기 신도시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개발을 기대하던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국토교통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이란 도시의 업무·상업·교통·주거 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인구·사업체의 정체 또는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노후계획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정의(제2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정책협의회 마련(안 제10조)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p>록 특례 규정(안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 원도심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 또는 지역 정체성의 유지·관리 및 발전이 필요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의 유지,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1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교육기반 지원, 보육기반 확충, 노후·유숙시설의 정비 및 활용 등 추진(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 가능(안 제2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사업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시행 및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지원하는 지방원도심정비지원기구를 지정 가능(안 제32조 및 제33조)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192호(서왕진 의원 등 11인)] ('26.1.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 (제안방향)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 [의안번호: 제16194호(이연희 의원 등 11인)] ('26.1.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폐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 -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제안방향)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조사 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복합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가능(안 제5조) ▪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8조) ▪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안 제9조) ▪ 토지 등의 사용·수용 및 미사용 학교용지 보상 등에 관해 규정(안 제11조) ▪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 사항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안 제22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234호(조승환 의원 등 10인)] ('26.1.22.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빈 건축물은 범죄·붕괴 위험 및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주변을 슬럼화함에 따라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경우 지역 내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쇠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시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빈집정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률 간 관리체계 등이 서로 달라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이 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어 소유자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적극적 정비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아우르고, 빈 건축물 정비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특례 등을 마련함으로써 빈 건축물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 목적(안 제1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시장·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해 등급 재산정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현황조사 실시(안 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시장·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 가능(안 제18조)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의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정비가 시급하거나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조) ▪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안전조치·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관리 등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금 지급 및 보조금 등을 우선하여 실시하거나 그 수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7조) ▪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 ▪ 시장·군수 등은 빈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55조)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235호(서왕진 의원 등 11인)] ('26.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많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 (제안방향)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247호(김태선 의원 등 10인)] ('26.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토록 규정 중이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종괄·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치 않은 실정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 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 (제안방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의무화 - 또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256호(김주영 의원 등 11인)] ('26.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 강화	<p>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 발생 가능 -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 - (제안방향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제안방향②)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263호(김정호 의원 등 10인)] ('26.1.22.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중 - 그러나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해 작업환경이 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복적·누적적 방식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는 사고보다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유해요인 중심의 규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 (제안방향)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추가(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제37조 제1항제2호 가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16279호(안태준 의원 등 10인)] ('26.1.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중 - 그런데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자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법률명	주요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19호(박홍배 의원 등 17인)] ('26.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 즉,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증대 또한,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식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 (제안방향)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신설)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29호(안호영 의원 등 11인)] ('26.1.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 중이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또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과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 발생 중 (제안방향)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주택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38호(송재봉 의원 등 10인)] ('26.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중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역, 조합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조합원 모집, 추가 분담금, 조합의 자금운영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 (제안방향)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가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자금 보관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 등 자금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및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비용 대비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주택조합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5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시공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조합의 해산 등에 대해 사·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6 신설 등)
「건축물 관리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46호(박성훈 의원 등 12인)] ('26.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간 공작물을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 제기 (제안방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없이 공작물의 축소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안 제45조의2 신설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48호(송언석 의원 등 1078인)] ('26.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3월 10일 시행을 앞둔 현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5호)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는바,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제안방향)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에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안 법률 제2104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물류시설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50호(윤종오 의원 등 13인)] ('26.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실정이기에 이러한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C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 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부재한 상황 (제안방향)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 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건축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번호: 제16365호(윤종오 의원 등 13인)] ('26.1.2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이유) '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으며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현행법을 통해 강화되었으나,

법률명	주요 내용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굴뚝·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제안방향)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 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2조)

전영준 연구센터장  02-3441-0793  yjjun@cerik.re.kr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동향

종합개요

- 이달 주요 하위법령 입법·고시 현황을 종합하면, 총 20건의 제도 정비가 추진됨.

구 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건수	8	3	1	0	8

- 주요 하위법령 개정은 ‘△고용유지 중심의 노동시장 안정화, △공사계약의 공정성 강화, △적정 공기 및 적정 대가 확보 제도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됨. 이는 건설산업의 비용 구조와 계약 관행에 대한 제도적 재정렬이 본격화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구 분	하위 법령명		소관부처	공고번호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제2025-50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26-48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2025-161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026-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6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26-7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제2026-21호	
시행규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2026-8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제2025-504호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2025-1615호	
행정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26-36호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기준」		조달청	제2026-3호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용노동부	제2025-121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025-12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제2026-1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26-3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제2026-25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026-34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026-38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제2026-3호	

1 주요 하위법령 개정 사항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개정 법률(노란봉 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임. 현행 시행령상 부재했던 교섭 단위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안정성 및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이러한 절차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분리·통합 기준으로 제시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나 ‘교섭 관행’ 등은 정성적 요소가 강해 노동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판단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특히, 결정 기간 연장 허용이 노조의 신속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으며, 심의 장기화 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나 노사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 이번 개정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섭 단위 결정의 객관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향후 노동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구체적인 심사 지표를 조속히 확립하고, 심의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함.

구 분	주요 내용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사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 보완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 연장을 통한 심사의 전문성 제고, 교섭 단위 분리·통합 기준 구체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보 유도
배경	개정 법률(25.9.9 개정)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행 시행령 내 부재했던 교섭 단위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의 투명성 확보 요구 증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기간 연장 근거] 교섭 요구 사실 및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 시, 노동위원회가 10일 이내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1회 연장 가능 조문 신설 • [교섭 단위 결정 기준 구체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 판단 기준 명문화

- [② 건축법 시행규칙] 그간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전용 분양 관행을 바로잡고, 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사용승인 현장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아울러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규제를 현실화하고 품질시험성과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여, 건축 행정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번 개정안은 불법 주거 전용을 차단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제도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디지털 기반의 증빙 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 사후 단속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한편, 이러한 제도 정비와 겸증 절차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단계의 서류 확인만으로는 분양 이후 발생하는 불법 이용 행태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행정상 한계가 있음. 또한 가설건축물 등의 요건 완화에 따른 권리 분쟁조정 기준이 미비하며,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및 감리 서명 확대 등이 현장의 실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법령명	「건축법 시행규칙」
시사점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외 사용(주거용)에 대한 행정적 차단벽을 높이는 동시에, 집합건물 운영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축 현장의 안정 책임 강화 도모
배경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전용 방지 및 숙박업 신고 유도, 화재 사고(부산 반얀트리 등) 후속 조치로 사용승인 현장 조사의 실효성 확보,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현실적인 동의 절차 마련 및 법적 정합성 제고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숙박시설 관리 강화]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요건 고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숙박업 신고기준 준수 증빙 서류(분양계약서 등) 제출 의무화(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제8호 신설) • [가설건축물 동의 요건 완화] 집합건물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 시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결의로 요건 완화(제13조제1항) • [사용승인 검사 투명성 제고] 사용승인 조사 시 건축사 및 건축물이 함께 나타난 전경 사진 및 층별 사진 첨부 의무화(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품질관리 및 서식 정비]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적용 공사로 명확화하고(제19조제4항제4호), 공사감리일지 서명자에 건축사보를 포함하여 정비(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 [③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²⁾후속 조치로서, 무리한 공기 단축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됨. 기존 계약체결 시 모호했던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설계서 핵심 항목으로 명문화하여, 민간 공사에서도 계약 단계부터 현실적인 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표준도급계약서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친다는 점이 현장 안착의 걸림돌임. 특히 민간 시장의 계약 자율성 구조상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조항을 배제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실질적 유인책 부족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불가피함.
- 공기 산정 근거를 설계서 수준으로 격상시킨 이번 조치는 시공사가 정당한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임. 다만, 민간 부문의 특성상 발주자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기준 준수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공정 조항을 상시 감시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구 분	주요 내용
법령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사점	민간 공사계약 단계부터 적정 공사 기간 산출 근거의 투명화 유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건설사의 객관적 근거 기반 공기 연장 요청을 위한 법적 토대 강화,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및 안전 리스크의 선제적 방어 가능성 제고
배경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부문의 합리적 공사 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존 계약체결 시 모호했던 공기 산정기준을 설계서 핵심 항목으로 포함하여 계약 단계부터 현실적인 시공 기간을 확보하려는 제도 보완 취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서 정의 확대] 설계서의 범위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외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추가 명시(제2조제6호)

2) 관계부처합동(2025.9.15),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 [④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기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전가 등 그간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접 공사 지원, 추가 지질조사 등)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실비 청구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계약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러한 절차적 정비와 실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접비 및 제반 비용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발주처와의 견해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수요기관의 예산 제약이나 소극적인 협의 태도에 대해 시공사가 대응할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하여,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 건설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임. 발주처와의 견해차를 줄일 수 있는 상세 산정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분쟁 시 시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중재 기구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공정 계약 문화의 안착을 도모해야 함.

구 분	주요 내용
법령명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시사점	인접공사 편의 제공이나 기술제안 보완 등 관행적으로 건설사에 전가되었던 비용에 대한 실비 청구 근거 신설, 이를 통한 공공공사 수행 기업의 수익성 보전 및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 전가 차단 효과 기대
배경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집행기준 내 모호한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과업이나 편의 제공에 대한 적정 대가 보장을 통한 공공 입찰 제도의 공정성 강화 취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공사 편의제공 대가 지급]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인접공사 편의 제공 시 실비 범위 내 대가 청구 가능 조문 신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의2) [기술제안 보완 적정대가 보장]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술제안 보완 시 계약금액조정 방법 및 시기에 대한 협의 근거 마련(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 [추가 지질조사 복구비용 지급]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추가 지질조사 및 복구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2 전체 하위법령 개정 현황

- 2026년 1월 기준 중앙행정기관별 건설산업 관련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현황(총 20건)을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 주택·건설, 조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실무 규제 완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판단 기준 고시 위임 (안 제18조제2항)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요건 ‘소정근로시간 20% 단축’ 일원화 (안 제19조제1항) 	입법예고 중 ('26.1.5 공고)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급 고용유지 조치 지원 요건 무급휴업 기준 일원화(안 제21조의3제1항) 지원유형 일원화 조문 정비·한시 조항 삭제(안 제19조제4항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결정기간 10일→1회 연장(안 제14조의3제3항) 교섭요구 확정공고 시정신청 노동위원회 결정기간 10일→1회 연장(안 제14조의5제5항)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4항) 	'26.3.10 (개정법 시행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계약 분양 대상 선정 경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분양 정보 종합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료 요청 세부 내용 규정, 제출 체계 구축, 효율적 운영·활용 근거 신설, 위탁기관 사항 규정 	'26.4.3 (예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자격 기준 규정 및 공공주택사업자 상담·업무공간 확보 노력 의무화(안 제15조) 	입법예고 중 (26.1.2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토정보공사·특례시 지방공사를 보상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경쟁 촉진 및 업무 효율성·서비스질 제고(안 제43조제1항) 	입법예고 중 (26.1.23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규약 개정안 요약본 배포·홈페이지 공고(안 제20조제5항) 관리비 사업계획·예산안 1개월 전 승인(안 제26조제1항) 재난안전·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조문정비(안 제34조제2항제2호) 하자보수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안 제57조제3항)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력 기술인력 포함(안 별표) 필수시설 전부 용도변경 문구 명확화(안 [별표3]제1호다목) 화재안전보강 철거·증설 신고로 완화(안 [별표3] 제3호나목 등) 과태료 처분기준 세분화·경감기준 명시(안 [별표9]) 법령 문장·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제4항 등 5개 조항) 	입법예고 중 (26.1.23 공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 조합 범위 구체화(안 제2조의2) 사원용 주택 범위 임원 제공 주택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기업구조조정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1년 연장·준공 후 미분양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인구감소 지역 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26.12.31까지, 안 제4조의3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납세의무자 1인 선택(안 제5조의2제3항) 3년 내 미별실 주택 종부세 감면분 추징(안 제10조제1항) 	'26.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환공여구역(도로·하천·공원) 매입 경비 보조율 상향 협의 가능(제31조) 	입법예고 중 (26.1.22 공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유형 일원화 서식·조문 정비(안 제23조 등) 매출액 감소 비교 구간 직전 2분기→6개월 변경(안 제24조제1항 등) 신청 기한 1개월→3개월 확대(안 제29조) 	입법예고 중 (26.1.5 공고)
	「건축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제도개선(허가 시 사용승인 요건 통지, 분양계약서 증빙 제출, 제8조제5항 등) 	입법예고 중

구 분	하위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승인조사·검사 전경 사진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집합건물 가설건축물 동의율 완화(전원→2/3, 제13조제1항)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제출대상 명확화(건설기술법 제55조제2항 공사, 제19조제4항제4호) 공사감리일자 서명자 “건축사보·감리원” 변경(별지 제21호 서식) 건축위원회 심의서식 전기차 주차 항목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인용조문 번호 정비(‘25.6.2. 개정 반영, 제43조의2 제9·10항) 	(‘26.1.5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주거지원 모듈러형 주택 특례 신설(안 제23조의3) 	입법예고 중 (‘26.1.23 공고)
행정 규칙	「훈령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공사 편의제공 실비 대가 청구(공사계약특수조건 제13조) 기술제안 보완 적정대가 협의(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 추가 지질조사·복구 실비 대가 청구(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26.1.1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4,798,427원으로 고시 – 2025년(4,806,267원) 대비 약 7,840원 하락 	'26.1.1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문 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제1·2·3·7조) 	'26.1.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 운영·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에 국가 융자금 추가(안 별표 제32조제3호) 	'26.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으로 명칭 변경(제33조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개정(‘24.9.6)에 따라 사전동의서 서식에 보유·이용 기간 및 14세 미만 정보 주체의 대리인 동의 반영(별지 제12호서식) 	'26.2.9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건축비 2,392,000원/m² 고시(전년 대비 0.5%↑) 	'26.1.1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 → “포함한다”, 현장설명서 및 공사 기간 산정근거”로 변경(제2조제6호) 	'26.1.16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공간 탄력적 활용을 위해 하층부 높이 규제 완화(안 제9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거실 일부 칸막이 하층부 높이 규제 (1.7m 이하) 삭제 	'26.1.2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특례법 개정(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전세사기피해보증 예외) 기재사항 추가, 가산세 이자율 10만분의 22로 변경(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택소유 예외사항 세부 확인방법 추가(별표 1) 	'26.1.13

